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
제안자 :운 영 위 원 장

I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,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
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
제안자 :운 영 위 원 장

I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,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민족의 화해,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, 경평축구대회의 부활 등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
제안자 :운 영 위 원 장

I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리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리향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